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11.

서 보 영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서보영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헌법」 제6조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를 준수하고,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에는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 두었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보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3132
----------	----------

발의일자: 2023. 11. 3.

발의자: 서보영, 장호섭, 남현주, 이선주,
황국주, 박종길

1. 제안이유

-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 나.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연합(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를 준수하고,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마련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1
-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내용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 11.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생략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달서구민의 의

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략 -

제13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1]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생략 -